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2서식] <개정 2021. 4. 13.>

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90일
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설립연월일 년 월 일
	대표자명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홈페이지 주소
	주소 또는 소재지	
신청내용	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명칭	대표자명
	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 (전화번호:)	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2조의4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. 최근 3년간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3.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.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처 리 절 차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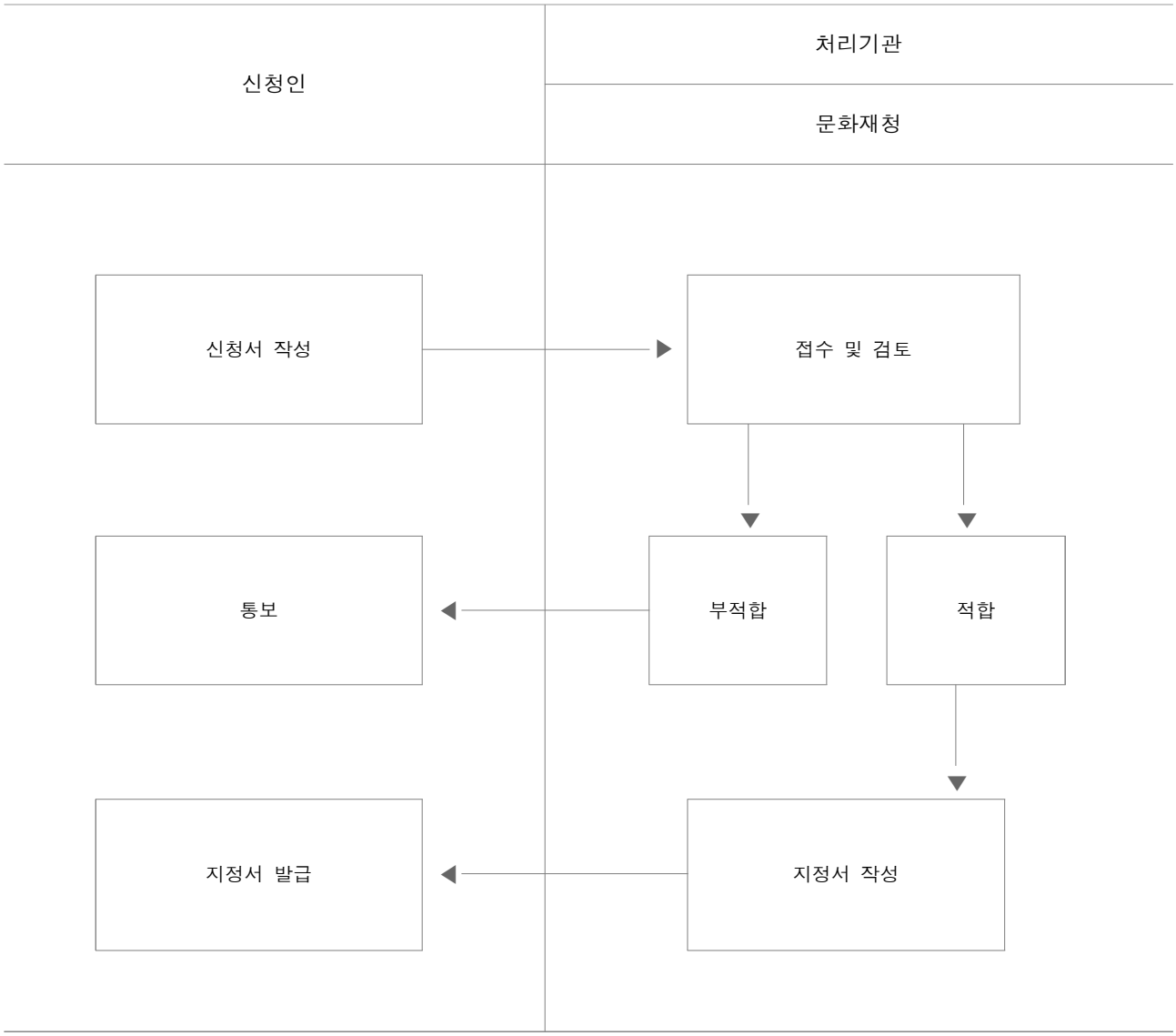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